

의안번호	제 50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0월 일 (제 295 회)

**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0년 10월 5일

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0. 5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1. 제안이유

평생교육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, 새로운 사업의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하여 충주학생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,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를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-9번지로 함(안 제17조)
- 나. 본청 직속기관으로 "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"을 설치하고, 관장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정함(안 제10절 신설)
- 다.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충주학생회관을 폐지함(안 별표 3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이의 없음
- 라. 기 타 :
 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 - (2) 입법예고 : 2010. 7. 30. ~ 2010. 8. 19. 별첨
  - (3) 규제심사 : 심사결과 규제사무 없음
  - (4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음

#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영동 79번지"를 "주중동 511-9번지"로 하고, "주중동 511-9번지"를 "영동 79번지"로 한다.

제3장에 제10절(제31조의4, 제31조의5, 제31조의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10절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

제31조의4(설치)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, 소질개발,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,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,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·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·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(이하 "충주학생회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충주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-1번지에 둔다. 다만, 충주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주시 봉방동 11-1번지에 둔다.

제31조의5(관장)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1조의6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각종 행사의 추진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2. 도서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
4.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·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
5.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절(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6까지)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(제34조 관련)

명 칭	위 치
제천학생회관	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설치)</p> <p>②학생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. 다만, 학생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-9번지,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-19번지에 둔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7조(설치)</p> <p>②----- ----- 주중동 511-9번지 ----- ----- 영동 79번지,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절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제31조의4(설치)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, 소질계발,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,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,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·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·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(이하 “충주학생회관”이라 한다)을</p>

설치한다.

② 충주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-1번지에 둔다. 다만, 충주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주시 봉방동 11-1번지에 둔다.

제31조의5(관장)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1조의6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각종 행사의 추진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2. 도서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
4.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·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
5.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

#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

- 자치법규명 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
- 예고 기간 : 2010. 7. 30 ~ 2010. 8. 19
- 제 출 자 :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
  - 충주학생회관장 분장 사무 조정 요구

제출분야	제 출 의 견		반영 여부
	개 정 안	조 정 요 구 안	
충주학생회관장에게 분장하는 사무조정	제31조의6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1. ~ 4. 생략 <u>&lt;신 설&gt;</u>	제31조의6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1. ~ 4. (개정안과 같음) 5. <u>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</u>	반영

## 관계 법령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10046호)  
제32조 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